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8년 8월 28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8월 30일

3. 제안이유

-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도정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
-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신혼부부와 육아기 부모가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·육아 직원에게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공무원 특별휴가(포상휴가) 조항 신설 (안 제18조 제10항)
 - 대상 : 지역의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
도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된 공무원
 - 포상휴가 : 5일 이내 포상휴가 부여

- 공무원 특별휴가(모성보호시간) 조항 신설 (안 제18조 제11항)
 - 대 상 : 임신중인 공무원
 - 내 용 : 휴식, 병원진료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
- 공무원 특별휴가(육아시간) 조항 신설 (안 제18조 제12항)
 - 대 상 : 만 5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
 - 내 용 :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, 그 외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
 -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도정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과
 - 임신·육아 직원에게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-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임신 중이거나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